

# 제품안전기본법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성대 과장

## 1. 서언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아니, 관심이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대대적으로 알렸기에 일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명칭에 '안전'이란 문구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정되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법은 지식경제부에서 제정한 법이다.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고 잘 몰랐다 하여도 이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해 모르고 지낼때가 아니다. 당장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법은 제1조 시행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다.(제1조 시행목적 :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법을 알아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이 법을 알아야 대량 리콜 및 소송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제품안전기본법은

그간 제품안전관리는 제품의 제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였으며,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및 수거·파기 등을 위한 행정조치가 미흡하였다. 때문에 불량·위해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4일 제품안전기본법들이 제정되고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리콜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해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진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토록 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고·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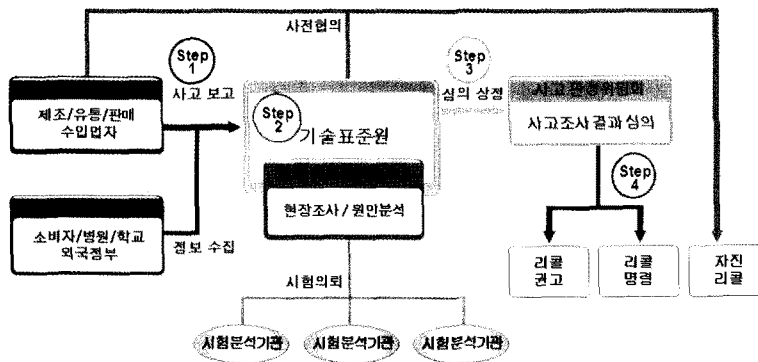
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품안전사고 조사단을 운영하고, 현재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명실공히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에 대한 R&D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도 펴나갈 방침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 종합계획에는 제품안전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품사고의 발생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 :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가 열람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 ③ 위험성이 경미한 사항은 리콜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언론에 공표토록 하고 있으며, 리콜명령 불이행 시 해당 물품을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위해제품의 수거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④ 사업자가 제품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관계부처에 보고하고 제품수거 등의 자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계획이 미흡할 경우, 시정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사고조사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강화 : 제품사고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를 운영하며, 사고제품의 사업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품안전 연구개발과 제품안전정보 제공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토록 하고 있다.



〈리콜 및 사고조사 절차〉

### 2-2. 제품안전기본법 벌칙조항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②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 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제품안전관리제도 현황

우리나라에서 제품안전기본법이 처음 시행되기에 이해를 돕고자 외국사례를 먼저 들어보고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보겠다.

#### 3-1. 국내 동향

① 안전관리제도 개요 : 현재 제품 안전관리는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되어 있다. 또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으로 차별관리되고 있다.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 : 53종, 자율안전 : 95종)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 14종, 자율안전 : 47종, 품질표시 : 30종)

\* 기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인증제도를 운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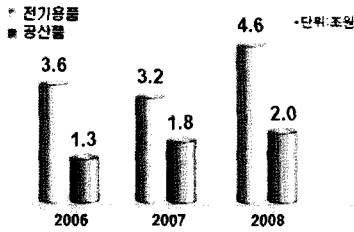
\*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 정기검사 및 시판품조사가 포함되나, 자율안전확인 품목은 시판품조사만 실시

〈표 1〉 현행 안전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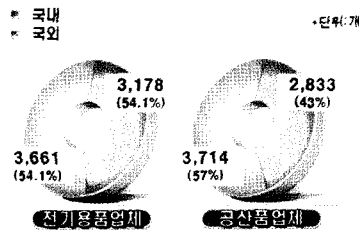
구분	전기용품	공산품
안전인증	안전인증신청 (제조업자) →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기관) → 인증서발급 (인증기관) → 정기검사연회 (인증기관)	정기검사연회 (인증기관)
	* 안전인증 후에는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실시	
자율안전확인	제품시험 (인증기관) → 자율안전확인 신고 (신고 증명서 발급) (인증기관) → 판매	판매
	* 제품시험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후, 판매 가능(공장심사·정기검사 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 <sup>1)</sup>	제품시험 (제조자, 수입자) → 판매	-
	* 기업이 자체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방식	
안전·품질 표시	-	* 소비자에게 안전품질 정보제공
어린이 보호 포장	-	* 어린이 보호용 포장용기 사용 의무 (흡입, 중독의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 제품)

<sup>1)</sup>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 2012년 1월 시행

② 현안 문제점 : 교역자유화로 수입제품은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기능은 취약한 것이 현상이다. 전기용품 및 공산품 인 증업체 수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추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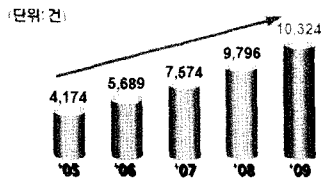


〈제품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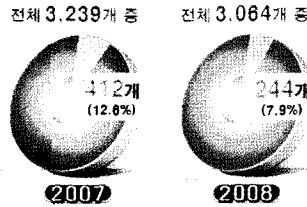


〈인증업체 현황〉

저가 수입제품 및 불법·불량 제품 등 안전취약 제품의 국내 시장 유통이 지속되면서 제품 관련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 어린이용품, 석면 함유제품 등 안전기준 미달제품 및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유통이 지속되면서 국민안전에 위협하고 있다.



〈제품관련 사고현황〉



〈불법제품 취급 온라인 쇼핑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품리콜, 언론공표 및 사고제품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상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현재개별법령은 행정조치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품 안전 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3-2. 외국 동향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은 생활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리콜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 시장의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강화 등 제품 안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2008년 '소비자제품안전향상법' 제정을 통해 제품·설계·제조·유통에 관한 4대 안전전략 발표), 일본의 경우도 중대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 등을 통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2007년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제품리콜 및 언론공표 제도 운영)

유럽 또한 국가별 시장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제품 위해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공유하는 제품안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표 2〉 선진국의 제품안전 관련법

구분	미 국	일 본	영 국
관련법	소비자제품안전법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건강안전노동에 관한 법
기관성격	독립연방기구	경제산업성 소속 독립행정법인	노동복지부 소속 비정부 공공기관
기관명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건강안전위원회(HSE)
조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 7개부서</li> <li>인원 : 약 530명</li> <li>예산 : 105백만불(20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 4개부서, 9개지소</li> <li>인원 : 약 400명</li> <li>예산 : 74억엔(20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 11개과, 29개지소</li> <li>인원 : 약 3500명</li> <li>예산 : 215백만파운드(2008)</li> </ul>
정보제공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 제품위험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li> <li>사망, 중상으로 인한 민사소송 보고의무</li> <li>전국위해감시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 제품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li> <li>제품위해정보망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자에 정보제공 의무(NBSS) 운영</li> <li>EC 회원국간 제품안전 네트워크 구축, 운영</li> <li>긴급경보통지시스템 (RAPEX) 운영</li> </ul>
제품리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유통 중단</li> <li>결함사항 공표</li> <li>리콜권고, 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명령 및 표시금지</li> <li>위해방지명령(리콜)</li> <li>체제정비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제품 안전성조사</li> <li>사업자에 리콜의무</li> </ul>
제도시행	1999년	2007년	1994년

### 3-3. 주요 국가의 자발적 리콜

- ① 미국 : 사업자는 제품결함 발견시 제품명, 결함의 유형과 크기 등을 CPSC에 즉시(24시간 이내) 보고한다. 보고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8년도에 CPSC에서 실시한 563건의 리콜이 모두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리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CPSC는 자발적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품 결함에 의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제품의 리콜(수리, 교환, 환불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 사업자의 최초 보고 후, 자발적 리콜 가능 (CPSC와 사전협의)
  - 20일 이내에 리콜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진도현황' 을 보고
  - 사업자의 정보제공과 시정조치가 충분할 경우, 행정명령은 유보
- ② 일본 : 사업자는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사고의 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경제산업성에 제출한다.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품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을 실시할 때에는 '리콜개시 보고서' 및 '리콜 추진상황 보고서' 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리콜이행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사발표 등을 통한 언론공표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제품안전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그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내년 2월 법이 시행된다면 시행목적대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아무 관심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이 법이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시행되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제조업체들도 이 법을 미리 알고 대처하여 대량 리콜이나 소송 등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